

【2025학년도 제20차】

규정심의위원회

“나를 나답게”



제20차 규정심의위원회 안건

○ 일 시: 2025. 10. 23.(목), 09:30~

○ 장 소: 기획팀 회의실(문화관 204호)

○ 심의 안건

연번	안건	입안부서	배석	예상시간
1	심의 「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」 개정 건	교원인사팀	교원인사팀장	'20
2	심의 「교원인사규정」 개정 건			
3	심의 「성과급적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」 개정 건			
4	심의 「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」 개정 건			
5	심의 「인권센터규정」 개정 건	인권센터	인권센터장	'15

○ 추후 일정

규정관련 심의기구(순)	비고
교무위원회	- 매월 둘째, 넷째주 화요일
대학평의위원회	- 학칙 해당
법인이사회	- 직제, 인사, 보수에 관련한 규정 해당
제21차 규정심의위원회	- 2025.11.3.(월) 09:30~

- 학칙 및 직제규정: 입안예고공청회 3일 이상 의견조회 시행

규 정 입 안 서

규정명	「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」		
입안형태	☐ 제 정		

「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5조(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) ①보직교원의 학기별 책임 및 감경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한다. 1. 책임시간 가. 부총장 : 0~3시간(연간) 나. 교무위원 : 3시간(연간 6시간) 다. 창업지원단장, 혁신사업단장, RIS추진단장<삭제>, 미래융합대학장, 평생교육원장, 부처장, 산학협력부단장, LINC3.0부단장<삭제>, 국제교류원부원장, 스포츠단부단장 <보직신설>: 4시간(연간 8시간) 라. 행정부서 실·팀장(교직부장, IR센터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역량개발인증센터장, 글로벌교육지원센터장, 진로취업지원센터장, 학생상담센터장, 교양교육지원센터장, 원격교육지원센터장, 인권센터장, 평생학습지원센터장, 입학지원센터장, RIS지원센터장<삭제>, 전공설계지원센터장, ASEM센터장, 학생취·창업지원센터장<삭제>, <보직신설> 글로벌교육혁신센터장 포함), 도서관장 <보직신설> : 5시간(연간 10시간) 마. <삭제 2015.2.4.> 바. <삭제 2015.2.4.>	제5조(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) ①보직교원의 학기별 책임 및 감경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한다. 1. 책임시간 가. 부총장 : 0~3시간(연간) 나. 교무위원 : 3시간(연간 6시간) 다. 창업지원단장, 혁신사업단장, 미래융합대학장, 평생교육원장, 부처장, 산학협력부단장, 국제교류원부원장, 스포츠단부단장, 전주 및 진천 RISE사업단 부단장 및 본부장: 4시간(연간 8시간) 라. 행정부서 실·팀장(교직부장, IR센터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역량개발인증센터장, 글로벌교육지원센터장, 진로취업지원센터장, 학생상담센터장, 교양교육지원센터장, 원격교육지원센터장, 인권센터장, 평생학습지원센터장, 입학지원센터장, 전공설계지원센터장, ASEM센터장, 학생복지센터장, 취·창업지원센터장, 글로벌교육혁신센터장 포함), 도서관장, 전주 및 진천 RISE사업단 센터장 및 팀장 : 5시간(연간 10시간) 마. <삭제 2015.2.4.> 바. <삭제 2015.2.4.>
<신설>	부 칙(학교법인 우석학원-000호) 이 규정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규 정 입 안 서

규 정 입 안 서			
규정명	「교원인사규정」		
입안형태	☐ 제 정 ☒ 개 정 ☐ 폐 지		
소관부서	교원인사팀	관련부서	해당사항 없음
부서간 협의 결과	• 해당사항 없음		
법인이사회	• 심의 해당		
대학평의원회	• 해당사항 없음		
입안사유 (추진배경)	•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4조의6(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) 조문이 제24조9로 이동함에 따라 인용함		
관련근거 (관계법령)	• 사립학교법 시행령 <일부개정 2025.09.16 [제35746호, 시행 2025.09.19.] 교육부> 제24조의9(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)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제11조제1항제1호나목,「공무원보수규정」제15조제6호 및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11조의3 등 국립·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. [본조신설 2020.9.25] [제24조의6에서 이동, 종전 제24조의9는 제24조의12로 이동 <2025.9.16>]		
주요내용 (제·개정내용)	• 제38조(휴직교원의 처우) 제2항 - “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4조의6”을 “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4조의9”로 문구 수정		
기대효과	•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조문 이동에 따른 행정적 혼선 방지		
구성원 참여·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(공청회, 설명회, 의견조회 등)	가. 의견수렴 유무 나. 공청회 및 공고기간(포털 및 홈페이지) 다. 의견제출 유무 라. 의견수렴 반영사항	해당사항 없음	
첨부자료	「교원인사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		

「교원인사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35조(휴직사유)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1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(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.) 2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. 천재·지변 또는 전시·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.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.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. 국제기구·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.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. 만 19세 미만의 아동·청소년(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)을 입양(入養)하는 경우 <이하 생략>	제35조(휴직사유) (현행과 같음) <이하 생략>
제38조(휴직교원의 처우) ①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4할을 지급한다. ②제35조 제7호의 육아휴직은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4조의6(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)에 따른다. ③제3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, 제7의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<신설>	제38조(휴직교원의 처우) ① (현행과 같음) ②제35조 제7호의 육아휴직은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4조의9(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)에 따른다. ③ (현행과 같음)
<신설>	부 칙(학교법인 우석학원-000호) 이 규정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【연관】 「우석학원 정관」 개정 필요

현 행	개 정 (안)
제47조(휴직교원의 처우) ①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4할을 지급한다. ②제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교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따른다. ③제44조 제2호 내지 제6호, 제7호의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	제47조(휴직교원의 처우) ①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4할을 지급한다. ②제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교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에 따른다. ③제44조 제2호 내지 제6호, 제7호의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규 정 입 안 서			
규정명	「성과급적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」		
입안형태	☐ 제 정		

「성과급적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23조(휴직) ①교원의 휴직에 관련하여 「교원인사규정」 제35조(휴직사유), 제36조(휴직기간), 제37조(휴직교원의 신분)를 준용한다. ②「교원인사규정」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휴직한 교원에게는 그 기간 중 보수의 4할을 지급한다. 단,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산 안에서 봉급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③제35조 제7호의 육아휴직은 <u>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4조의6(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)에 따른다.</u> ④「교원인사규정」 제3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, 제7의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	제23조(휴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제35조 제7호의 육아휴직은 <u>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4조의9(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)에 따른다.</u>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부 칙(학교법인 우석학원-000호)</u> <u>이 규정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

규 정 입 안 서			
규정명	「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」		
입안형태	☐ 제 정 ☒ 개 정 ☐ 폐 지		
소관부서	교원인사팀	관련부서	해당사항 없음
부서간 협의 결과	• 해당사항 없음		
법인이사회	• 심의 해당		
대학평의위원회	• 해당사항 없음		
입안사유 (추진배경)	•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4조의6(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) 조문이 제24조9로 이동함에 따라 인용함		
관련근거 (관계법령)	• 사립학교법 시행령 <일부개정 2025.09.16 [제35746호, 시행 2025.09.19.] 교육부>		
	제24조의9(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)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제11조제1항제1호나목,「공무원보수규정」제15조제6호 및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11조의3 등 국립·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. [본조신설 2020.9.25] [제24조의6에서 이동, 종전 제24조의9는 제24조의12로 이동 <2025.9.16>]		
주요내용 (제·개정내용)	• 제28조(휴직) 제3항 - “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4조의6”을 “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4조의9”로 문구 수정		
기대효과	•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조문 이동에 따른 행정적 혼선 방지		
구성원 참여·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(공청회, 설명회, 의견조회 등)	가. 의견수렴 유무	해당사항 없음	
	나. 공청회 및 공고기간(포털 및 홈페이지)		
	다. 의견제출 유무		
	라. 의견수렴 반영사항		
첨부자료	「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		

「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28조(휴직) ①교원의 휴직은 교원인사규정 제35조(휴직사유), 제36조(휴직기간), 제37조(휴직교원의 신분)를 준용한다. ②교원인사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휴직한 교원에게는 그 기간 중 보수의 4할을 지급한다. 단,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산 안에서 봉급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③제35조 제7호의 육아휴직은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4조의6(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)에 따른다. ④교원인사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, 제7의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	제28조(휴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제35조 제7호의 육아휴직은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4조의9(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)에 따른다. ④ (현행과 같음)
<신설>	부 칙(학교법인 우석학원-000호) 이 규정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규정 입안서

규정명	「인권센터규정」			
입안형태	☐ 제 정		☒ 개 정	☐ 폐 지
소관부서	인권센터	관련부서	해당사항 없음	
부서간 협의 결과	• 특이사항 없음			
대학평의위원회	• 해당사항 없음			
입안사유 (추진배경)	• 제9조(구성) 제4항 오류 정정 • 제28조(이의신청) 제2항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가 청구될 경우,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행정적 부담과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, 센터장이 재심의 사유를 절차적 하자나 중대한 사실의 추가 확인으로 한정하여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.			
관련근거 (관계법령)	【사례조사】「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」 제21조(이의신청) ②센터장은 이의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결정을 할 수 있다. 1. 처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. 중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			
주요내용 (제·개정내용)	• 제9조(구성) 제4항 문구 수정: 제2항 → 제3항 • 제28조(이의신청) 문구 수정 및 호 신설: 재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한 1. 처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. 중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			
기대효과	• 불필요한 재심의를 줄여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, 재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며, 명확한 기준 제시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			
구성원 참여·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(공청회, 설명회, 의견조회 등)	가. 의견수렴 유무	해당사항 없음		
	나. 공청회 및 공고기간(포털 및 홈페이지)			
	다. 의견제출 유무			
	라. 의견수렴 반영사항			
첨부자료	「인권센터 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			

「인권센터 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(안)

현 행	개 정(안)
제9조(구성)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.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1. 교직원 2. 학생 3. 인권 보호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(이하 이 조에서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⑤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,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학생 위원은 1년으로 한다. ⑦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인권센터 소속 교직원으로 한다.	제9조(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(이하 이 조에서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8조(이의신청) ①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. ②<u>심의위원회는</u>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<u>하여야 한다.</u> ③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, 3개월 이내에 재조사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제28조(이의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②<u>센터장은 이의신청이 각 호에 해당할 경우</u>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<u>할 수 있다.</u> 1. 처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. 중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부 칙</u> <u>이 규정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